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1. 관련: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및 공표 계획(산업보건과-4965, '20.11.18.)
2.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율이 예년에 비해 낮고, 이로 인해 연말에 건강진단이 집중되어 연내 정상적인 건강진단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근로자 건강진단을 유예하기로 하고, 붙임과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소속기관(노조, 연맹, 회원사, 지부, 지회 등) 및 관련 사업장에서 착오가 없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1부.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 1부. 끝.

거봉백병원	담당자	팀 장	센터 장	행정부원장	병원 장
문서 처리	백영록	김민서	박주영	김민서	김민서
접수일자	11/23	11/23	11/23	11/23	11/23
접수번호	227	11/23	11/23	1	1
접수지	백영록	지시	16일감사: 김민서		
주무부서	건강관리	지시	주무부서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터어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보건관리전문기관 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위원 **한인영** 보건사무관 **이종걸** 산업보건과장 **전결** 2020. 11. 19. **손필훈**

협조자

시행 산업보건과-4978 (2020. 11. 19.)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고용노동부) 11동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748 팩스번호 044-202-8093 / hiy79@korea.kr / 비공개(5)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진단기관용, '20.11.18.)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 드림

1 적용 기준

-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0. 11. 19.(목) ~ 별도 해제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1 일반건강진단

-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①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②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 조치사항)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20.12.31.까지 접수 및 재방문(출장)일 협의, 실시 안내

-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21.6.30.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 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검진기관 조치사항) 근로자·사업주에게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또는 가능한 경우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로 판정

<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기간 >

구 분		일반건강진단		
		20년	21년	22년
사무직 (2년주기)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20.12.31까지	비대상	‘22.1.1~12.31까지
	유예를 원하는 자	~ 21.6.30.까지		
비사무직 (1년주기)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20.12.31.까지	‘21.1.1~12.31.까지	
	유예 원하는 자	~ 21.6.30.까지		
	유예자 중 ‘21년 검진 희망자	· ‘20년:~ 21.6.30.까지 · ‘21년: ‘21.7.1 ~ ‘21.12.31.까지		

②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1. 기본원칙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1.29~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20.12.31.까지 실시**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1.29.)」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20.2.28.)」

- '2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1일 수점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21.3.31.까지 실시**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및 '20.9.21.)」

-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을 유예한 경우 근로자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하되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배치전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한번에 실시 가능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 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검진기관 조치사항) 근로자·사업주에게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또는 가능한 경우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로 판정

-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동시 실시 권장

2. 단계별 실시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
 -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 (유예기한) 「유예 사유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3.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함을 안내
 - * 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 검진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예 대상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참조		「유예를 원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	「7개 유해인자*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유예 ★ 7개 유해인자도 근로자가 원하면 유예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 유예

3.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흡에 한정함),
7.톨루엔-2,4-다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다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나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마넨 올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흡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흡,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 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조치하고 실시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① 건강진단기관

- ① 건강진단 장소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비치
- ② 검사자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
- ③ 가능한 경우 검사자와 수검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설치
- ④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검사자는 건강진단 업무 배제
- ⑤ 임신부, 당뇨병 등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검사자는 가급적 폐활량 검사 업무에서 배제

- ⑥ 출장검진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을 검진장소로 선택
- ⑦ 사용한 일회용 방역물품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밀봉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내에서 처리

[폐기능검사 시 준수사항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 폐활량검사는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
- 폐활량검사실은 환기시설 및 소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 검사자에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제공
- 수검자마다 적절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 코마개를 교체

[2] 검사자(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① 건강진단 전 검사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여부 확인
- ② 검진장소 출입구에서 수검자의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③ 건강진단을 할 때, 수시로 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
- ④ 출장검진 차량의 흡부방사선 촬영실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공간은 이동식 송풍기, 송풍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공기를 배기시키는 등 강제환기
- ⑤ 검사자는 KF80-KF94 또는 동급 이상 호흡기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강검사'와 '폐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
- ⑥ 청진기, 이경, 청력검사 버튼 등의 수검자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 전·후에 70% 에탄올 소독솜으로 소독
- ⑦ 조용한 공간으로 청력검사 부스 이동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청력 부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실시